

의안 번호	2410	[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심 사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5. 2.(금) 강혜순 의원 외 9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5. 2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5. 14.(수)

2. 제안설명 요지 (강혜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 신설 및 확대 기준을 명확화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일과 가정 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기존법령 폐지에 따른 제정 사항 반영 (안 제15조)
- 경조사 휴가 명시 및 확대에 관한 사항(별표4)
 - 출산 : 배우자 출산 시 휴가일수 신설 (단체야: 20일, 다태야: 25일)
 - 입양 : 입양 시 본인 휴가일수 신설 (20일)
 - 사망 :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휴가일수 확대 (1일→3일)
 - 결혼 : 대상에 따른 휴가일수 명시 (본인: 5일, 자녀: 1일)
 - 탈상 :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성 저하에 따른 폐지

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 제1항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홍숙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확대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 직원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위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지방공무원법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- 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7. 4. 25., 2021. 11. 30.>
-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,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. 다만,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)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6. 30., 2021. 11. 30., 2021. 12. 31., 2023. 7. 18., 2024. 7. 2., 2025. 2. 11.>

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[별표 1] <개정 2025. 2. 11.>

경조사 휴가일수표(제7조의7제2항 관련)

구분	대 상	일수
결혼	본인	5일
	자녀	1일
출산	배우자	2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)
입양	본인	20일
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	3일

비 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